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65

발의연월일: 2021. 4. 28.

발 의 자: 김철민·강민정·맹성규

박찬대 • 배진교 • 양이원영

이용선 · 김원이 · 강선우

이은주·김남국·서영석

임호선 · 허종식 · 장철민

고영인 · 이형석 · 문정복

류호정 • 이광재 • 정찬민

장혜영 • 민홍철 • 김상희

김수흥 · 홍기원 · 남인순

최기상 · 이정문 · 안민석

도종화 · 민형배 · 김민철

이해식 • 박 정 • 윤후덕

김유덕 • 유동수 • 유기홍

박완주 • 권인숙 • 김예지

의원(4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대학 진

학율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실한 상황임.

또한, 고등교육에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9조및 제3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지원위원회"를 "특별지원위원회 (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을 "지원부서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를 "지원부서로"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학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 ② 특별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 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개발
 - 2. 장애유형별 고등교육 지원 지침 개발

- 3. 장애학생의 복지 및 취업지원
- 4. 장애학생 교육지원업무 담당자의 연수
- 5.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6.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 7. 그 밖에 고등교육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고등교육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교육전문직 등을 둔다.
-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 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하기 위하여-----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 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 ------특별지워 원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 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 한다. 라 한다)-----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신 설>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 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의 장이 임명한다.

② (생략)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인원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수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u>지원부서 또는</u>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 는 이를 <u>말한다</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u><신 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기이버지르
<u>지원부서를</u>
②
지원부서로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0 /회레기 기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대학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 5. (현행과 같음)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

③ (생 략) <신 설>

1. ~ 5. (생 략)

추어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 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 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 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③ (생략) <신설>

-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 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 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에 대한 지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 구·개발
 - 2.
 장애유형별
 고등교육
 지원

 지침 개발
 - 3. 장애학생의 복지 및 취업지원
 - 4. 장애학생 교육지원업무 담당자의 연수
 - 5.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6.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 육복지 실태조사
 - 7. 그 밖에 고등교육센터의 목

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

- ③ 고등교육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교육전문직 등을 둔다.
-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